

##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04. 11. 3

제안자 : 행정건설위원장

### 1. 제안경위

2004년 11월 3일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박지위 위원외 1인의 찬성으로 서면동의된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을 심사한 결과,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원안가결함.

### 2. 제안이유

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추진된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가감산을 조정안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최저 30%감산에서 최고 100%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2004년도 재산세율이 기준에 의하여 부과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공동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로 인한 해당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과도한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세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현행 마포구세조례를 개정하여 점진적으로 인상 되도록 함.

### 3. 주요골자

0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 마포구세조례 제21조의2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20% 경감함.

#### 0 표준세율 개정내용

(1)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,200만원이하인 경우  
세율 "1,000분의3"을 "1,000분의2.4"로 인하

(2)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,200만원 초과 1,600만원이하인 경우  
세율 "1,000분의 5"를 "28,800원+1,2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4"로 인하

(3)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,600만원 초과 2,200만원이하인 경우  
세율 "1,000분의10"을 "44,800원+1,6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8"로 인하

- (4)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2,200만원 초과 3,000만원이하인 경우  
세율 "1,000분의30"을 "92,800원+2,2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24"로 인하
- (5)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3,000만원 초과 4,000만원이하인 경우  
세율 "1,000분의50"을 "284,800원+3,000만원 초과금액의1,000분의40"로 인하
- (6)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4,000만원 초과인 경우  
세율 "1,000분의70"을 "684,800원+4,000만원 초과금액의1,000분의56"로 인하

#### 4. 개정근거

- 가.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  
나.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 6

5. 개정조례(안) : 따로 붙임

6. 예산조치 : 필요없음.

7. 기타사항 : 산·구 조운대비표

서울특별시마포구조세 제 호

###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세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(세율) 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주택 :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
과 세 표 준	세 율
1, 200만원이하	1,000분의2.4
1, 200만원 초과 1,600만원이하	28,800원+1,2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4
1, 600만원 초과 2,200만원이하	44,800원+1,6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8
2, 200만원 초과 3,000만원이하	92,800원+2,2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24
3, 000만원 초과 4,000만원이하	284,800원+3,000만원 초과금액의1,000분의40
4, 000만원 초과	684,800원+4,000만원 초과금액의1,000분의56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2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과세 기준일인 2004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구 조문대비표

현 형	계 정 안
제21조의 2(세율)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경하는 바에 의한다.	제21조의 2(세율)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경하는 바에 의한다.
1. 건축물	1. 건축물
가. 주택: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	가. 주택: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과세표준	과세표준
세율	세율
1,200만원 이하 (1,000분의3)	1,000분의 2.4
1,200만원 초과 1,600만원이하 (1,000분의5)	28,800원+1,200만원
1,600만원 초과 2,200만원이하 (1,000분의10)	초과금액의1,000분의 4
2,200만원 초과 3,000만원이하 (1,000분의30)	44,800원+1,600만원
3,000만원 초과 4,000만원이하 (1,000분의50)	초과금액의 1,000분의 8
4,000만원 초과 (1,000분의70)	92,800원+2,200만원
	초과금액의 1,000분의 24
	284,800원+3,000만원
	초과금액의 1,000분의 40
	684,800원+4,000만원
	초과금액의 1,000분의 56
	부 칙
	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 2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인 2004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에대한동의

의안	
번호	

발의년월일 : 2004. 11. 1

발 의 자 : 박지위 위원외 1인

### 1. 제안이유

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추진된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가산율을 조정안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최저 30%감산에서 최고 100%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2004년도 재산세를 이 기준에 의하여 부과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공동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로 인한 해당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과도한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세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 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현행 마포구세조례를 개정하여 점진적으로 인상 되도록 함.

### 2. 주요골자

- 0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 마포구세조례 제21조의 2 제1호 기목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20% 경감함.
- 0 표준세율 개정내용
  - (1)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,200만원이하인 경우  
세율 " 1,000분의3" 을 " 1,000분의2.4" 로 인하
  - (2)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,200만원 초과 1,600만원이하인 경우  
세율 " 1,000분의 5" 를 " 28,800원+1,2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4" 로 인하
  - (3)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,600만원 초과 2,200만원이하인 경우  
세율 " 1,000분의10" 을 " 44,800원+1,6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8" 로 인하
  - (4)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2,200만원 초과 3,000만원이하인 경우  
세율 " 1,000분의30" 을 " 92,800원+2,2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24" 로 인하

- (5)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3,000만원 초과 4,000만원이하인 경우  
 서울 "1,000분의50" 을 "284,800원+3,000만원 초과금액의1,000분의40" 로 인하
- (6)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4,000만원 초과인 경우  
 서울 "1,000분의70" 을 "684,800원+4,000만원 초과금액의1,000분의56" 로 인하

### 3. 개정근거

가.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

나.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 6

4. 개정조례(안) : 따로 붙임

5. 예산조치 : 필요없음.

6. 기타사항 : 신· 구 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###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(세율) 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주택 :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
과 세 표 준	세 율
1,200만원이하	1,000분의2.4
1,200만원 초과 1,600만원이하	28,800원+1,2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4
1,600만원 초과 2,200만원이하	44,800원+1,6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8
2,200만원 초과 3,000만원이하	92,800원+2,2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24
3,000만원 초과 4,000만원이하	284,800원+3,000만원 초과금액의1,000분의40
4,000만원 초과	684,800원+4,000만원 초과금액의1,000분의56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 2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과세 기준일인 2004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1조의 2(세율)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 건축물</p> <p>가. 주택: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과세표준</p> <p>세율</p> <p>1,200만원 이하 (1,000분의3)</p> <p>1,200만원 초과 1,600만원이하 (1,000분의5)</p> <p>1,600만원 초과 2,200만원이하 (1,000분의10)</p> <p>2,200만원 초과 3,000만원이하 (1,000분의30)</p> <p>3,000만원 초과 4,000만원이하 (1,000분의50)</p> <p>4,000만원 초과 (1,000분의70)</p>	<p>제21조의 2(세율)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 건축물</p> <p>가. 주택: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과세표준</p> <p>세율</p> <p>1,200만원 이하 1,000분의 2.4</p> <p>1,200만원 초과 1,600만원이하 28,800원+1,200만원 초과금액의1,000분의 4</p> <p>1,600만원 초과 2,200만원이하 44,800원+1,6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8</p> <p>2,200만원 초과 3,000만원이하 92,800원+2,2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24</p> <p>3,000만원 초과 4,000만원이하 284,800원+3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40</p> <p>4,000만원 초과 684,800원+4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56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래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 2 제1호 기목의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인 2004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.</p>



## 地方稅法

### 제 188조 (稅率)

① ~ ⑤ 생략

⑥市長·郡守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産稅의 稅率을 第1項의 標準稅率의 100分의 50의 범위안에서 加減調整할 수 있다. <新設 97·8·30>

###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회의규칙

제 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, 제안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제출의안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.

제 19조의 6(위원회의 제안)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등 기타의 안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제 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.

제 20조(동의의 의제 성립)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와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.